

2025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1차) 정정 공고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 내용 중 전기차 구매보조금[추가보조금(국비)] 등의 내용을 정정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인천광역시장

○ 변경사항

- (변경전)

3. 전기차 구매보조금

○ 추가보조금(국비)

전기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p>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p> <p>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p> <p>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p> <p>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보조금 지급신청 전까지 명의변경, 수출말소시 미보유자로 인정)</p> <p>[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요율 또는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금</p>
	초소형	<p>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p>

- (변경후)

3. 전기차 구매보조금

○ 추가보조금(국비)

전기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p>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p> <p>농업인* 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p> <p>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p> <p>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p> <p>[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요율 또는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금</p>
	초소형	<p>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p>

- (변경전)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변경후)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정정 공고문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5,013대 [상반기(1차) 4,017대, 하반기(2차) 996대]**

- 상반기(2월), 하반기(7월) 2회 공고 시행 예정

(단위: 대)

구 분	계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버스)	비고
계	5,013	4,391	590	32	
상반기(1차, 80%)	4,017	3,513	472	32	
하반기(2차, 20%)	996	878	118	-	

- ①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② 상반기 1차 보급사업 종료 시점(25.6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물량은 추가 공고 없이 하반기 2차 보급사업 물량에 포함하여 보급사업 추진

○ **보급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 11. 30.(예산 소진 시 종료)**

- 상반기(1차) : 공고일로부터 ~ 6. 30.(18:00)(예산 소진 시 종료)
- 하반기(2차) : 2025. 7. 1.(09:00) ~ 11. 30.(18:00)(예산 소진 시 종료)

○ 상반기(1차) 보급 물량배정

- 전기승용차 : 3,513대

(단위: 대)

구분	계	일반	택시 (전체물량 10%)	우선순위 (전체물량 10%)	비고
전기승용차	3,513	2635	439	439	

※ 집행되지 않은 택시물량, 우선순위 물량 7월 1일부터 통합집행

- 전기화물차 : 472대

(단위: 대)

구분	계	일반	택배* (전체물량20%)	중소기업생산 (전체물량10%)	우선순위 (전체물량10%)	비고
전기화물차	472	236	118	59	59	

※ 집행되지 않은 택배, 중소기업생산, 우선순위 물량 7월 1일부터 통합집행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승합차 : 32대 [일반 15대, 어린이통학버스 17대]

※ 집행되지 않은 일반, 어린이통학차량 물량은 7월 1일부터 통합집행

○ 우선순위 물량 대상자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 다자녀(만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출생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 취득 사실이 없는 자)
-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하려는 자
- ※ 말소기준 : 23년 환경부 지침 공고 시행 이후(23.2.13.) 폐차 건
- 소상공인

○ 보급차량 :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참조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없이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차량에 따라 차등지원

※ 보조금 지원차량 및 지원금액은 「붙임1」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 ① 개인택시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인천인 경우는 인정
 - ②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 적용 (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
 - ③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등은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단, 1대만 구매하는 법인에 한함)
 - ① 법인택시(중소기업)는 면허등록지(인천광역시)로 한정하며 대수 및 재지원제한 없음
 -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본거지 확인

- **(공공기관*)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며, 국비만 지원(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 (승용·승합·화물) 2년, 공고 이전에 지원받은 구매자도 소급적용
- ▷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차량을 출고한 경우, 보조금 대상자 확정없이 출고한 경우
 -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가능

○ 보급대수 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 기관 : 동일 차종 1대
- (승용)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화물)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국비만 지원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 : 1661-0970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경우】

- ▷ 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법인이 구매하는 전기승합차
- ▷ 초소형(승용·화물)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전기화물차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 2023년 환경부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23.2.13.) 이후 폐차건에 해당
- ▷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에는 보조금 전액(국비, 시비) 및 이자가 환수됨.
- 보조금 지급신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교부 및 지급 불가.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음(별도 확인 필요)

3. 전기차 구매보조금

○ 구매보조금(최대)

(단위: 만원)

차종		합계	국비	시비	비고
승용차	초소형	280	200	80	
	일반	810	580	230	
화물차	초소형(0.35톤)	565	380	185	
	경형(0.5톤)	1,144	770	374	
	소형(1톤)	1,560	1,050	510	
승합	중형	5,715	5,000	715	
	대형	8,000	7,000	1,000	
승합 (어린이통학)	중형	11,429	10,000	1,429	
	대형	13,143	11,500	1,643	

- ①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붙임1 참조
- ② 승용차는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국비) 5.3천만원 미만(전액), 5.3천만원 이상~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 추가보조금(국비)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공 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중·대형, 소형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국비 10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300만원 추가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초 소 형	전기택시에 대하여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 형, 경 형, 초 소 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농업인* 이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택배용 차량*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신규 택배차량은 전기화물차 출고하고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 ※ 소상공인 30% 추가지원금과 중복 지원 가능 *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초 소 형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 수령시 20만원만 추가 지원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없음 [예시]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요율 또는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 보조금
초 소 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보조금(시비)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공 통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시비 지원액의 20% 시비 추가 지원 ※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시비 지원액의 20% 시비 추가 지원
	중·대형, 소형	다자녀가구인 개인 구매 시 해당 차량 시비 지원액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시비 3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 ※ 부모 중 한 명이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추가보조금 지원(자녀는 불가)
		전기택시에 대하여 해당 차량 보조금에 시비 5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 해당차량 보조금에 시비 20만원 추가 지원
	소형, 경형, 초소형	농업인*이 구매시 해당차량 보조금에 시비 20만원 추가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제출 자

※ 시비 추가보조금에 다수 사항이 해당되어도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 추가 지원 사항만 지원(중복 불가)

4.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 신청기간(상반기 1차) : 공고일로부터 ~ 6. 30.(예산 소진 시 종료)

※ 상반기 잔여물량 발생 시 하반기 보급물량에 합산됨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제조·수입사)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신청)

○ 제출서류

- (공통) 구매 지원신청서,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 서류)
- (외국인)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
- (공공기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인천광역시 소재 증빙 가능분)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우선지원, 추가보조금 등 대상자별 증빙서류 >

대 상 자	증 빙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등록증) ○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이후 현재까지 전국(거주지) 지방세(자동차세) 미과세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 주민등록초본(만18세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경유화물차를 전기차로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또는 말소사실 증명서(폐차) ※ 말소기준은 '23.2.13. 이후건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사업자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점사업(초소형 승용, 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택배) 물량 ○ 6개월 택배업 유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사업자 운송사업 허가증 ○ 차량출고일부터 6개월 간 택배업을 유지했는지 여부는 1)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확인 또는 2) 국토교통부 인정 택배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을 통해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통학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승합차 구매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자부담 증빙서류(구매보조금 접수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승용차, 화물차 선정기준 : **차량 출고 · 등록순**
- 승합차 선정기준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일반물량 우선순위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② 광역버스운송사업자
③ 공사 · 공단 ④ 개인 · 법인 순으로 지원예정
- 선정방법
 -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격부여 단계로 선정함.
 -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출고(예정)증 필히 첨부
 -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출고 및 출고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 또는 대상자 선정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여된 자격 및 대상자 선정 취소
 - ※ 승합차의 경우 환경부 및 인천시의 승인에 따라 선정을 달리 할 수 있다.
 - ※ 예산범위 내 보급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동일일자에 「지원가능확인」을 요청 할 경우 「지원가능확인」 요청 시간순으로 지원 예정

6. 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20일 이내로 신청
- (제출방법)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 후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보조금 지급 시스템으로 등록**
 -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3호서식) ② 세금계산서 ③ 사업자등록증(제조·수입사)
 - ④ 통장사본(제조·수입사) ⑤ 자동차등록증(사본) ⑥ 지방세완납증명서(사본)
 - ※ (추가제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 택배물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대형전기승합차는 최소자부담 증빙서류 사본 등

7.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 (최소 자부담금)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전체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의 합이 차량가격을 초과하거나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 할 경우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 * 구매자가 이자 지원, 충전기 설치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 (예시) 구매자가 1억원 대출을 받아 구매비용을 충당하는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에서 제작사가 구매자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자 2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경우, 구매자의 자부담액은 이를 제외한 8천만원이 되므로 상기 규정을 위반
-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바람.
- (타차종 변경) 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부득이한 경우 인천광역시 사전승인 시 가능). 단, 제조사 또는 수입사 변경의 경우 취소 후 재접수.
- (공동명의) 차량 인도 후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함.
 - 공동명의자 중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보조금지원 간주하여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8년) 준수**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타 시도 시민에게 차량 판매 시 판매 이전에 인천광역시에 전기차 판매 승인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환수 조치됨.
 - ※ 다만 수출목적이 아닌 그밖의 경우 회수요율이 발생하는 2년이 지나면 판매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 2년 이내, 20,000km 미운행한 전기화물차의 매매 시 지역에 관계없이 사전승인 필요 (별지 제5호, 제7호 서식 제출)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의무 등의 모든 의무사항은 구매자(매수자)에게 승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등록 말소(폐차 등) 시에는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시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보상금액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국비+시비) 30%가 환수되며, 타 시도 시민에게 판매시에는 차량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시비보조금이 추가 환수조치 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산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3.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4.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름

9. 기타사항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관/홈페이지	주요역할	연락처 / 홈페이지주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확인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www.ev.or.kr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법인] 신청	1661-0970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충전기 고장신고 관련	1661-9408
인천시	-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32-120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해당 군·구 교통관련 부서

<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군구 연락처 >

관련 기관(부서)	전화	관련 기관(부서)	전화
중구청(교통운수과)	032-760-7574	부평구청(교통행정과)	032-509-6755
동구청(교통과)	032-770-6603	계양구청(교통민원과)	032-450-5694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032-880-4527	서구청(교통정책과)	032-560-4864
연수구청(교통행정과)	032-749-8747	강화군청(경제교통과)	032-930-3364
남동구청(자동차관리과)	032-453-2915	옹진군청(도서교통과)	032-899-2582

< 제작·수입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제작·수입사	연 락 처	제작·수입사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BMW 코리아	080-700-8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GM	080-3000-5000
르노코리아	080-300-3000	테슬라코리아	080-617-1388
대창모터스	043-535-6336	파워프라자	02-855-4955
메르세데스 벤츠	080-001-1886	마스터전기차	02-590-7000
케이지 모빌리티	080-500-5582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080-360-0100
마이브	1544-0703	세보모빌리티	1522-9282
마스터 전기차	02-590-7281	일진정공	031-376-9012
에엔플러스	031-366-9600~3	오텍	02-2628-0660
디피코	033-340-4800	모빌리티네트웍스	1522-7480
이브이케이엠씨	02-553-9866	제이스모빌리티	1533-8816
GS 글로벌	(화물)02-2005-5269 (승합)02-2005-5191	에스에스라이트	1644-7752
이비온	1588-6389	중원자동차	031-765-2881

붙임1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1부.

[별지 서식]

- 제1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
- 제2호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1부.
- 제3호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제4호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 신청서 1부.
- 제5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요청서 1부.
- 제6호 전기자동차 폐차 승인요청서 1부.
- 제7호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 1부. 끝.

붙임 1

2025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승 용

구분	제 조/ 수입사	차종	보조금(만원)		
			계	국비	시비
중형	현대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400	287	113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64	261	103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50	251	99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29	236	93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340	244	96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63	260	103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768	560	208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838	610	228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829	604	225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838	610	228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783	571	212
		코나 일렉트릭 2WD 스탠다드 17인치	721	544	177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	797	590	207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9인치(빌트인 캠)	720	535	185
		아이오닉5 N	324	232	92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841	613	228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837	610	227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830	605	225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792	578	214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829	604	225
더뉴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805	587	218		

		더뉴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N라인 20인치	762	556	206
		Electrified G80 AWD 19인치(2025)	384	275	109
		더뉴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722	527	195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2025)	349	250	99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2025)	371	266	105
		코나 일렉트릭 2WD 롱레인지 17인치(빌트인 캠)	797	590	207
	기아	The all-new Kia Niro EV	730	533	197
		EV9 2WD 19인치	384	275	109
		EV9 2WD 20인치	381	273	108
		EV9 4WD 19인치	361	259	102
		EV9 4WD 21인치	370	265	105
		EV9 GTL 4WD 21인치	358	257	101
		더뉴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786	572	214
		더뉴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824	599	225
		더뉴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827	601	226
		더뉴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840	610	230
		EV3 롱레인지 2WD 17인치	789	565	224
		EV3 롱레인지 2WD 19인치	789	565	224
		EV3 스탠다드 2WD	668	479	189
		더뉴EV6 GT	324	232	92
		더뉴EV6 스탠다드	713	511	202
	BMW 코리아	i4 eDrive40	263	189	74
		i4 M50	240	172	68
		iX1 xDrive30	215	154	61

	테슬라 코리아	Model 3 RWD	255	183	72	
		Model 3 Long Range	282	202	80	
		Model Y RWD	268	201	67	
		Model Y Long Range	256	184	72	
		Model Y Performance	266	191	75	
		Model 3 Performance(2024)	261	187	74	
		Model Y Long Range 19인치	282	202	80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아우디 Q4 40 e-tron	280	201	79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282	202	80	
		폭스바겐 2024 ID.4 Pro	589	422	167	
		폭스바겐 2024 ID.5 Pro	300	215	85	
		폭스바겐 2025 ID.4 Pro	589	422	167	
		아우디 Q4 Sportback 45 e-tron	280	201	79	
		아우디 Q4 45 e-tron	280	201	79	
	케이지 모빌리티 주식회사	토레스 EVX 2WD 18인치	508	367	141	
		토레스 EVX 2WD 20인치	484	350	134	
		코란도 EV 2WD	474	340	134	
	경형	기아	레이 EV 2WD 14인치 4인승 승용	635	455	180
			레이 EV 2WD 14인치 2인승 밴	635	455	180
			레이 EV 2WD 14인치 1인승 밴	635	455	180
	소형	현대 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 향속형 17인치	698	500	198
캐스퍼 일렉트릭 향속형 15인치			698	500	198	
캐스퍼 일렉트릭 기본형 15인치			698	500	198	
초소형	(주)세보 모빌리티	CEVO-C SE	280	200	80	

□ 화 물

제조/수입사	구분	차종	보조금(만원)		
			계	국비	시비
마스타전기차	화물(초소형)	MASTA VAN	564	380	184
	화물(초소형)	MASTA HIM(MEV-PU3)	564	380	184
	화물(초소형)	MASTA HIM(MEV-PU4)	564	380	184
디피코	화물(초소형)	포르트로-탑S	564	380	184
	화물(초소형)	포르트로-픽업S	564	380	184
	화물(경형)	포르트로350L-탑	903	608	295
	화물(경형)	포르트로350L-픽업	903	608	295
현대자동차	화물(소형)	포터II 일렉트릭(24MY)	1565	1,080	485
	화물(소형)	ST1 기본형 카고 17인치	1782	1,200	582
	화물(소형)	ST1 기본형 카고 냉동 17인치	2302	1,550	752
	화물(소형)	ST1 기본형 하이탑 17인치	1782	1,200	582
기아	화물(소형)	봉고 전기차	1585	1,100	485
	화물(소형)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781	1,199	582
	화물(소형)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781	1,199	582
일진정공	화물(소형)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봉고)	1812	1,220	592
	화물(소형)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포터)	1762	1,186	576
루트17	화물(소형)	다니고C(0.8톤 전기트럭)	1427	996	431
	화물(경형)	e-TOVI	473	319	154

이브이케이엠씨	화물(소형)	MASADA 픽업	390	263	127
	화물(소형)	MASADA 3세대 2밴	356	240	116
	화물(소형)	MASADA 3세대 4밴	322	217	105
	화물(소형)	MASADA 2밴	387	261	126
	화물(소형)	MASADA 4밴	352	237	115
	화물(소형)	EC35 2밴	257	173	84
제이스모빌리티	화물(소형)	이티밴	531	358	173
	화물(소형)	이티4밴	503	339	164
	화물(소형)	이티밴 미니	567	382	185
	화물(소형)	이티4밴 미니	567	382	185
	화물(소형)	이티밴 프로	716	482	234
	화물(소형)	이티4밴 프로	716	482	234
오텍	화물(소형)	오텍봉고Ⅲ EV 냉동탑차	1565	1,054	511
GS글로벌	화물(소형)	T4K	558	376	182
	화물(소형)	T4K 냉동탑차	941	634	307
에스에스라이트	화물(소형)	젤라	433	292	141
	화물(소형)	젤라 P200	787	530	257
피닉스코리아	화물(소형)	썬라이즈-T01	539	363	176
케이지모빌리티	화물(소형)	토레스 EVX VAN 20인치	513	349	164
	화물(소형)	토레스 EVX VAN 18인치	517	352	165
센트로에이케이	화물(소형)	E-CV1	591	398	193
파트몰에이투지	화물(소형)	SW40	549	370	179
이브이앤솔루션	화물(소형)	STEGO-Z	762	513	249

□ 승 합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보조금(만원)		
			계	국비	시비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	5,715	5,000	715
		카운티 일렉트릭(마을버스)	5,715	5,000	715
		카운티 일렉트릭(어린이버스)	10,918	9,554	1364
	이비온	E6(JL618S)	1,236	1,082	154
		E6(JL618S), 어린이통학	2,406	2,105	301
	GS글로벌	BYD eBus7	2,400	2,100	300
	한차	GREENWAY720	4,515	3,951	564
	테라팩토리	테라밴	1,126	986	140
	중원자동차	EV J1	2,084	1,824	260
	쓸테로	트라베리-Y540E	1,720	1,505	215
		트라베리-Y550E	1,720	1,505	215
		트라베리-Y560E	1,720	1,505	215
	에빅오토모티브코리아	세레온(어린이)	11,305	9,892	1413
		세레온(마을)	5,634	4,930	704
대형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이층버스	14,642	12,812	1830
		일렉시티(3PACK)	7,472	6,538	934
		일렉시티(4PACK V1)	7,993	6,994	999
		일렉시티(4PACK V2)	7,637	6,683	954
		일렉시티 타운	7,317	6,403	914

우진산전	아폴로1100전기버스 23MY	7,027	6,149	878
	아폴로1200-B43	7,360	6,440	920
	아폴로1200-S42	8,000	7,000	1000
	아폴로1200-B42	7,355	6,436	919
	아폴로1200-B29	7,358	6,439	919
	아폴로1200-S29	7,998	6,999	999
	아폴로900 V2.0	6,481	5,671	810
	아폴로1100 양문형	6,069	5,311	758
	아폴로1100 V2.0	6,752	5,908	844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의무운행기간(8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인천광역시의 사전 판매승인(440-4345)을 득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승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단, 승합차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결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인천광역시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5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인천광역시 결정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초소형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인천광역시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성명		매수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차량 정보					
차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판매사유					
매매시 유의사항					
<p>-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됩니다.</p> <p>- 의무운행기간(8년) 내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 등록 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p> <p>※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p>					
<p>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매도자 : (인)</p> <p style="text-align: right;">매수자 : (인)</p> <p>인천광역시장 귀하</p>					
<p>※ 제출서류: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증빙서류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판매계약서 1부.</p>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증빙자료

판매 차량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전면사진(번호판)		차량등록증과 함께 찍은 계기판사진	

신청자는 위 판매승인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주행기록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